

1. 개정이유

2021. 1.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21. 4. 6.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수익사업 주요 승인사항, 수익사업 변경사항 신고 제도,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수익사업의 유효기간,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및 정지 명령의 세부기준 등 수익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그 밖에 5·18민주유공자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 주요 승인사항 및 변경사항 신고 제도 등 도입(안 제32조)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주요 승인·변경승인 사항을 규정하고, 변경사항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경미하거나 변경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부적절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승인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신고로 갈음하게 하며,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한 부관(附款)의 부가 근거 및 한계를 명문화하여 법치 행정을 도모함

나.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도입(안 제33조)

수익사업의 승인기준으로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직접생산·수행을 규정하고, 수익계약 권한이 있는 보훈단체·자활용사촌·자활집단촌과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수익사업 승인을 하지 않도록 하여 수익사업 관련 단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경쟁 등 부작용을 방지하되,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승인을 할 수 있게 하여 사안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함

다. 수익사업의 유효기간 등 도입(안 제35조)

수익사업 유효기간 및 연장 신청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수익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적인 수익사업 운영 감독을 가능하게 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기간 연장 관련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 경감을 도모함

라.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등 기준 도입(안 제38조, 안 별표 4)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명령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라 5·18민주유공자단체가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처분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함

마.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도입(안 제42조)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의 경우 공인회계기관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게 하여 수익사업 운영 관련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감사 관련 절차 및 기간을 규정하여 원활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실태조사 도입(안 제43조)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어떠한 사항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현장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수익사업 실태 조사를 도모함

사. 정보공개 도입(안 제44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위임된 수익사업 관련 정보공개 사항 및 방법을 규정하여 투명한 수익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5·18민주유공자단체로 하여금 공개된 정보 중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정보공개의 신뢰도를 높임

아.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권 도입(안 제47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위임된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에게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제출기한, 제출 방법을 규정하여 국가보훈처장의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권을 구체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법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1호”를 “법 제94조제2항, 제9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89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 ① 법 제55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

하 “5·18민주유공자단체”라 한다)는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그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이하 “승인”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방지 및 수익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익사업의 업종·품목·판매지역 등의 범위, 수익사업을 할 때의 준수사항, 수익금 사용에 있어서 회원복지비 지출 비율,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조건(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승인조건은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방지 및 수익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5·18민주유공자단체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승인 또는 승인된 내용 중 변경승인에 따라 변경된 부분이 무효, 취소, 유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효력이 없으면 변경승인도 효력이 없다.

⑥ 법 제66조제2항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또는 공장 주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지번변경 등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사업장 또는 공장 축소에 관한 사항
4. 임기 만료 등에 따른 지부의 장 교체가 있고, 이로 인해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⑦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5·18민주유공자단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 관련 증빙서류[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의미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이하 “변경사항 신고”라고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제6항제1호의 사항: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 변경등기일로부터

3일까지

2. 제6항제2호의 사항: 사업장 또는 공장 주소지 변경일로부터 3일까지

3. 제6항제3호의 사항: 사업장 또는 공장 축소를 한 날부터 3일까지

4. 제6항제4호의 사항: 지부의 장 교체일로부터 3일까지

⑧ 변경사항 신고를 그 변경 전에 행한 경우로서 변경사항 신고 내용과 상이하게 변경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1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내용 및 이유를 보고하거나 관계 서류·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 신고 내용과 상이하게 변경된 경우: 상이하게 변경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3일까지

2. 변경사항 신고를 하였음에도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3일까지

제33조(수익사업의 승인기준)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승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한다.

1.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일 것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직접 물

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

나. 5·18민주유공자단체가 기술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수익사업

2.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법 제64조에 따른 사업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수익금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것

②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승인 신청한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법령에 따라 수익계약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

2.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제1항제7호다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 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 품목의 중복 여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물품목록번호

제34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5·18민주유공자단체는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38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제33조에 따른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
을 요구하는 서류

② 5·18민주유공자단체는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 변
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 변경계획서 1부

2.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
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38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또

는 수익사업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5·18민주유공자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5·18민주유공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35조(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기간은 해당 수익사업의 적정성,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 유효기간 연장시 관련 단체 간의 과잉 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 해당 수익사업 관련 각종 증명서류의 잔여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 1년에서 3년까지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결정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부터 역산하여 6개월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부터 역산하여 9개월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내에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연장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3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1부
2.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제5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⑦ 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0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적법하게 거쳤는지와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⑧ 국가보훈처장은 제7항에 따른 검토 후 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

를 하는 방법으로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기준·승인조건 준수 여부, 법 제67조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8항에 따른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로지원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법 제68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인 경우

2.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⑩ 국가보훈처장은 제8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제9항에 따라 제8항에 따른 심사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에 따라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⑪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여 해당 5·18민주유공자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⑫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제1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

의 유효기간 연장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5·18민주유공자단체는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직접 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제33조제1항제1호의 승인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5·18민주유공자단체는 법 제69조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37조(사업수행자 지정) ① 5·18민주유공자단체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이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해당 5·18민주유공자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제38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69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 취소 또는 정지 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행정처분 중 법 제69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은 법 제68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처분 중 법 제69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을 받아 수익사업의 정지기간에 있는 5·18민주유공자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69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5·18민주유공자단체가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잔여 계약업무”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로서 그 잔여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수익사업의 정지기간 내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한 물품의 생산이나 용역등의 수행을 초래(잔여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생산이나 용역등의 수행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않는 행위로서 수익사업의 정지기간 후 해당 수익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계약교섭·체결 등 수익사업 준비행위

④ 법 제69조제1항제1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

우”란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국가보훈처장이 잔여 계약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계약의 상대방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2.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⑥ 제5항에 따른 잔여 계약업무의 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5·18민주유공자단체·계약의 상대방·해당 계약 관련 이해관계자는 행정처분,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정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⑦ 국가보훈처장이 잔여 계약업무를 수행하게 할 때에는 해당 계약을 특정하여 행정처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잔여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5·18민주유공자단체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

실과 내용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한 5·18민주유공자단체는 해당 계약의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에 관한 증빙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제4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소속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5·18민주유공자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5·18민주유공자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지체 없이 소속 5·18민주유공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5·18민주유공자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46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이 정한다.

제41조(재심의 요구 등) ① 5·18민주유공자단체는 제40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6항 단서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구받은 경우 해당 심의·의결 사항을 재심의하여 재심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5·18민주유공자단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소속 5·18민주유공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42조(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5·18민주유공자단체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실태조사)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 고용, 임금, 공장, 생산설비,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 승인기준·승인조건 준수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 관련 계약의 상대방, 계약금액 등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여부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정보공개)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국가보훈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거나 그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5·18민주유공자단체명, 승인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주소지, 유효기간, 그 밖의 수익사업 운영 현황
2. 법 제73조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의 의견
3.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및 정지 명령 내역

③ 5·18민주유공자단체는 국가보훈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법 제7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내용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가 타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제4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자료 요청은 늦어도 그 자료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명백히 5·18민주유공자단체의 급박한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자료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 대부, 사용·수익(이하 “우선 매각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내용과 조건에 관한 사항
2. 우선 매각 등의 경위 및 이유에 관한 사항
3. 우선 매각 등의 대상이 된 재산(이하 “해당 재산”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우선 매각 등 이후 사용용도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4. 해당 재산의 등기·등록 등 공부(公簿)에 관한 사항
5. 해당 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소송관계에 관한 사항
6. 해당 재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사항

③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5·18민주유공자단체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상대방, 계약금액 등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경위 및 이유에 관한 사항
3. 처분하려는 재산(이하 “처분 재산”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처분 이후 사용용도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처분 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소송관계에 관한 사항
5. 처분 재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사항

제46조(시정조치)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법 제79조제3호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4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이하 “제출요구”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정관 기타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2.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원, 임직원 등에 대한 포상·징계·임면 등 신분상 조치 관련 사항
3.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총회, 이사회, 심의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
4.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주관하거나 참가하는 기념식, 추념식 등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3조의 정치활동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64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7. 법 제65조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법 제69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명령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법 제72조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10. 법 제73조에 따른 회계감사 등에 관한 사항
11. 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법 제75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법 제77조에 따른 보조금의 수령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4.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18민주유공자 단체에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현황,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항
 15.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18민주유공자 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한 물품의 현황,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항
 16.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8.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한 사항
 19. 5·18민주유공자단체와 관련한 법령을 시행 또는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5·18민주유공자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출요구를 할 경우 제출기한을 부여하되 제출요구한 때로부터 4일 이상의 범위에서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에 따라 제출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2. 명백히 5·18민주유공자단체의 급박한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그 회원·임직원 등 5·18민주유공자단체와 관련된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국가보훈처장은 서면이나 전자문서의 제출 외에도 제출요구하는 사항의 내용 및 성질을 고려하여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받을 수 있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 유족증(제6조제1항 관련)

1. 5·18민주유공자증

(앞 쪽)

(뒤 쪽)

85mm×55mm(PET-G카드)

2. 5·18민주유공자 유족증

(앞 쪽)

(뒤 쪽)

85mm×55mm(PET-G카드)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한다.

)]”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제2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1항·제55조의2제2항·제60조제3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1항·제84조의2제2항·제89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제12조의5·제55조의2제2항·제60조제3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제12조의5·제84조의2제2항·제8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4)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하고, 같

은 서식 제1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호”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호”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5항 및 제31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5항 및 제31조”로 하며, 같은 서식 중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2호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제2호”를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3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하고, 같은 서식 제2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로 하며, 같은 서식 중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호”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백상지 (80g/m²)”를

“백상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9조제7

항”을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항”을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2조”를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2조”를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을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를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4조의2”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중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 및 제55조의2제2항”을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 및 제84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뒤쪽 제2호 중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을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중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

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 및 제60조제3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제3항 및 제8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뒤쪽 제2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3제3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장”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바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2라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조”로 하며, 제3조제1항제5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제2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으로 하며, 제15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후단”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후단”으로 하고, 제17조 각 호 외 부분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바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3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및 제3호”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및 정지 명령 등 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처분등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등을 받은 날과 그 처분등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위반행위인지 여부는 제2호 각 목에 열거된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등을 하는 경우 가중된 처분등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등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등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등 기준(무거운 처분등 기준이 같으면 해당 행위의 태양, 각 위반행위의 성질, 해당행위가 이루어진 정황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더 중하다고 판단되는 위반행위의 처분등 기준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본다.

라. 처분등의 종류는 다음 4가지로 한다.

- 1) 법 제69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이하 “승인취소”라 한다)
- 2) 법 제69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이하 “정지”라 한다)
- 3)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하 “시정조치”라 한다)
- 4)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지도(이하 “행정지도”라 한다)

마. 처분등의 경중은 라목 기재의 순서에 의하고, 정지의 경중은 정지기간의 장단(長短)에 의한다.

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등 기준(무거운 처분등 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등 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처분등 기준상 가장 무거운 처분등의 종류가 정지이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정지기간(무거운 정지기간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정지기간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기간의 2분의 1[월(月) 단위 미만의 기간은 공제한다]을 더하여 처분한다. 다만, 이 경우 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바목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처분등의 종류 및 정도(이하 “산정기준”이라고 한다)가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산정기준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기준이 시정조치인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감경하고, 정지인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2분의 1[월(月) 단위 미만의 기간은 공제한다]의 범위에서 감경하고, 승인취소인 경우에는 정지로 감경하되 정지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에 따른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경미한 경우
- 3)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 국가보훈처장은 산정기준이 승인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산정기준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기준이 행정지도인 경우에는 시정조치로 가중하고, 시정조치인 경우에는 정지로 가중하되 정지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며, 정지인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2분의1[월(月) 단위 미만의 기간은 공제한다]의 범위에서 가중하되, 산정기준이 정지 5개월인 경우에는 정지 6개월로 가중하고, 정지 6개월인 경우에는 승인취소로 가중한다.

- 1) 위반행위에 따른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심각한 경우
- 2)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사목에 따른 감경사유도 있고, 아목에 따른 가중사유도 있는 경우에는 아목의 기준에 의한다.

차. 국가보훈처장이 이 기준에 따라 정지를 처분할 경우 정지기간은 월(月) 단위로 정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등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1호	승인취소			
나.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2호	승인취소			
다.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등 제66조 제3항의 승인기준을 위반한	법 제69조제1항제3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취소

경우					
라.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단체의 명의를 다른 사람 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법 제69조제1 항제4호	승인취소			
마.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 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 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	법 제69조제1 항제5호	시정조치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승인취소
바.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 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제1 항제6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취소
사.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 를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제1 항제7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취소
아.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 ·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경우	법 제69조제1 항제8호	시정조치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승인취소
자. 법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 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69조제1 항제9호	시정조치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승인취소
차.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 하여 수익사업의 운영을 계속 한 경우	법 제69조제1 항제10호	승인취소			
카.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제1 항제11호	행정지도	시정조치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9조제1 항제11호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승인취소	

수익사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제출일	접수일
신고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소재지	
신고사항	① []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 변경에 관한 사항 ② [] 사업장 또는 공장 주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지번변경 등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③ [] 사업장 또는 공장 축소에 관한 사항 ④ [] 임기 만료 등에 따른 지부의 장 교체가 있고, 이로 인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신고내용	변경 일자(변경사항 신고를 그 변경 전에 행하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 일자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용	
	변경 사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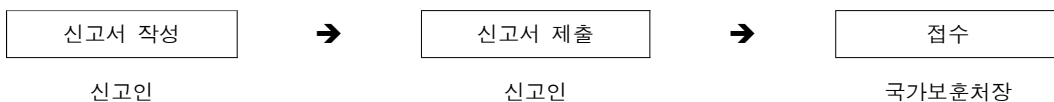
국가보훈처장 귀하

첨부서류	1. ①, ②, ③의 경우: 신고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증빙서류 1부 2. ④의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5·18민주유공자단체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변경사항 신고를 그 변경 전에 행한 경우로서 변경사항 신고 내용과 상이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은 상이하게 변경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3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내용 및 이유를 보고하거나 관계 서류·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8항제1호).
- 변경사항 신고를 그 변경 전에 행한 경우로서 변경사항 신고를 하였음에도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은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3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내용 및 이유를 보고하거나 관계 서류·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8항제2호).

처리절차



제 호

사업수행자 지정서

지 부 명:

대 표 자: ○ ○ ○ (생년월일)

주 소:

수익사업 사업명:

사 업 구 역: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수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5·18민주유공자단체) 회장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업종)	
	사업장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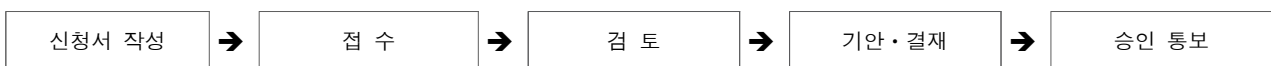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가보훈처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장 소재지, 사업소 직원 현황 및 조직도 및 관련 설비 현황 - 사업 경영을 위한 자금 명세 및 자금 조달 방법 - 경영계획 및 수익금 사용계획 -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별지 제38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5·18민주유공자단체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장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 안전명 :

□ 심의 결과 :

년 월 일

(5·18민주유공자단체)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

구 분	직 책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			
〃			
〃			
간 사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소재지		
신청내용	중전 수익사업 내용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승인시기
		사업장 소재지	
	변경 수익사업 내용 등	변경 내용	
		변경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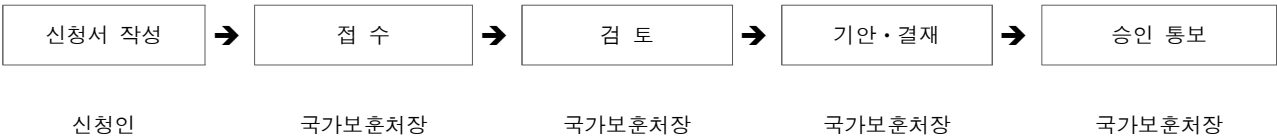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가보훈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변경계획서 1부 - 업종 및 품목 등의 변경 필요성 - 관련 조직 및 설비계획 - 자금조달 계획 및 향후 수익성 판단 등 2.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38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5·18민주유공자단체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제 호

수익사업 승인서

단 체 명:

대 표 자: ○ ○ ○ (생년월일)

주 소:

승 인 내 용:

수의계약 대상 단체 여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보 훈 처 장

관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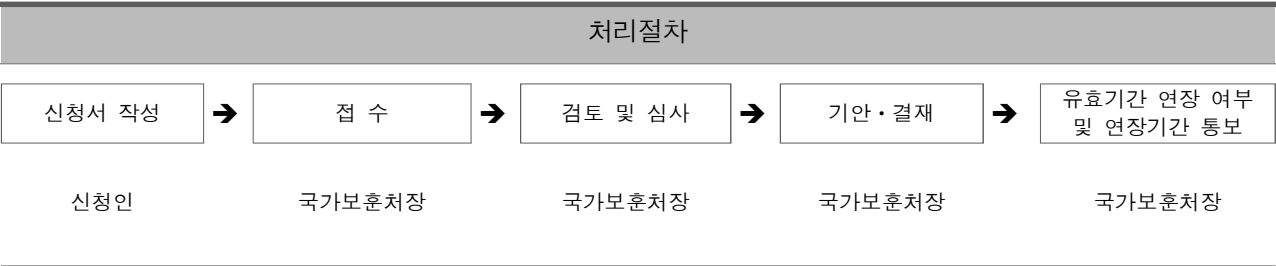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수익사업의 내용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승인시기	승인번호		
		사업장 소재지				
	희망하는 유효기간 연장기간 및 그 이유	희망하는 유효기간 연장기간				
		희망하는 이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가보훈처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2.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제 호

유효기간 연장서

단 체 명:

대 표 자: ○ ○ ○ (생년월일)

주 소: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승 인 시 기:

승 인 번 호:

사업장 소재지:

유효기간 연장 기간: . . . ~ . . . (년 개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보 훈 처 장

관인

[제 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 생 산 품 목:

○ 생산업체명: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00000-00000000)

○ 대표자 성명:

○ 소재지(본사):

(사업장):

○ 유효기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 업체의 직접생산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 가 보 훈 처 장

관인

북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관리대장

[illegible]

42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u>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제2조(5·18민주유공자 증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는 별표 1에 따른다.	제2조(5·18민주유공자 증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7조(신상 변동 신고 등)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②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제7조(신상 변동 신고 등) 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illegible]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94조제2항, 제95조제1항
제1호-----

--

5.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① 법 제89조제3항 -----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신설>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수익사업의 주요 승인사항

등) ① 법 제55조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5·18민주유공자단체”라 한다)는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그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

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해서는 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이하 “승인”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변경승인”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방지 및 수익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익사업의 업종·품목·판매지역 등의 범위, 수익사업을 할 때의 준수사항, 수익금 사용에 있어서 회원복지비 지출 비율,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조건(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승인조건은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

의 방지 및 수익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5·18민주유공자단체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승인 또는 승인된 내용 중 변경승인에 따라 변경된 부분이 무효, 취소, 유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효력이 없으면 변경승인도 효력이 없다.

⑥ 법 제66조제2항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제8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또는 공장 주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지번변경 등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사업장 또는 공장 축소에 관한 사항

4. 임기 만료 등에 따른 지부의 장 교체가 있고, 이로 인해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⑦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 하려는 5·18민주유공자단체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 관련 증빙 서류[제6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의미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이하 “변경사항 신고”라고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제6항제1호의 사항: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 변경등기 일로부터 3일까지

2. 제6항제2호의 사항: 사업장 또는 공장 주소지 변경일로부터 3일까지

3. 제6항제3호의 사항: 사업장 또는 공장 축소를 한 날부터 3일까지

4. 제6항제4호의 사항: 지부의 장 교체일로부터 3일까지

<신 설>

⑧ 변경사항 신고를 그 변경 전에 행한 경우로서 변경사항 신고 내용과 상이하게 변경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81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내용 및 이유를 보고하거나 관계 서류·장부나 그 밖의 참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 신고 내용과 상이하게 변경된 경우: 상이하게 변경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3일까지

2. 변경사항 신고를 하였음에도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3일까지

제33조(수익사업의 승인기준)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승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한다.

1.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일 것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

나. 5·18민주유공자단체가 기술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수익사업

2.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자금 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 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법 제64조에 따른 사업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수익금 사용계획에 반영

되어 있을 것

②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
유공자단체가 승인 신청한 수익
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의 업종 또는 품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
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
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
체 중 법령에 따라 수익계약
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국가보
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
고 있는 수익사업

2.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자
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규정에 따라 수익계약
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6조제1항제4호가
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

호다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한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의 업종, 품목, 사업장소 및 사업규모에 관하여 업종 또는 품목이 중복되는 수익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단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활용사촌 또는 자활집단촌과 합의한 경우 등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업종 또는 품목의 중복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업종의 중복 여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2. 품목의 중복 여부: 「물품목

<신 설>

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조달
청장이 정하는 물품목록번호
제34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
차) ① 5·18민주유공자단체는
법 제6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
익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
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
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
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38호서식의 사업수행
자 지정서(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
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
련하여 제33조에 따른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5·18민주유공자단체는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 변경계획서 1부

2.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별지 제38호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37조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신 설>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또는 수익사업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5·18민주유공자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5·18민주유공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35조(승인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기간은 해당 수익사업의 적정성,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 유효기간 연장시 관련 단체 간의 과잉 경쟁이나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 해당 수익사업 관련 각종 증명서류의 잔여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 1년에서 3년까지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결정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부터 역산하여 6개월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일부터 역산하여 9개월에 해당하는 날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내에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연장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3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1부

2. 별지 제40호서식의 복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제5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⑦ 제4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 70조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회를 적법하게 거쳤는지와 수익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
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검토
하여야 한다.

⑧ 국가보훈처장은 제7항에 따
른 검토 후 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기준·승인조
건 준수 여부, 법 제67조 위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
3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
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
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대
해서는 제8항에 따른 심사를 면
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판로지원법 제9조제4항에 따

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
기간 만료일이 법 제68조에 따
른 유효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
년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인 경
우

2.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
는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
이 의심되는 경우

⑩ 국가보훈처장은 제8항에 따
른 심사를 거친 뒤(제9항에 따
라 제8항에 따른 심사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결과에 따
라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유효
기간의 연장 여부 및 연장기간
을 결정하여야 한다.

⑪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
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유효기간의 연장 여
부 및 연장기간을 결정하여 해
당 5·18민주유공자단체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⑫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
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

<신 설>

에게 제1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5·18민주유공자단체는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제33조제1항제1호의 승인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5·18민주유공자단체는 법 제69조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

<신 설>

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
게 반납해야 한다.

제37조(사업수행자 지정) ① 5·1

8민주유공자단체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5·18민
주유공자단체의 지부 구역에 있
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
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
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
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이 해
당 수익사업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
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
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해당 5·18
민주유공자단체를 계약당사자
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
다.

<신 설>

제38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69조에 따른 수익사업
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행정처분 중 법 제69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은 법 제68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처분 중 법 제69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을 받아 수익사업의 정지기간에 있는 5·18민주유공자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69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5·18민주유공자단체가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잔여 계약업무”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한 경우로서 그 잔여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수익사업의 정지기간 내에 해당 수익사업에 관한 물품의 생산이나 용역등의 수행을 초

래(잔여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생산이나 용
역등의 수행을 초래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하지 않는 행위
로서 수익사업의 정지기간 후
해당 수익사업을 재개하기 위
한 계약교섭·체결 등 수익사
업 준비행위

④ 법 제69조제1항제1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
반한 경우”란 5·18민주유공자
단체가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
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
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
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국가보훈처장이 잔여 계약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것
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계약
의 상대방이 회복할 수 없는 손
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2.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
부

⑥ 제5항에 따른 잔여 계약업무
의 수행 여부와 관련하여 5·18
민주유공자단체·계약의 상대
방·해당 계약 관련 이해관계자
는 행정처분, 제5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사정 등에 대하여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다.

⑦ 국가보훈처장이 잔여 계약업
무를 수행하게 할 때에는 해당
계약을 특정하여 행정처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라 잔여 계약업무

<신 설>

를 수행할 수 있게 된 5·18민주유공자단체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통지한 5·18민주유공자단체는 해당 계약의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에 관한 증빙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 작성, 예산 지원 및 그 밖의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5·18민

<신 설>

주유공자단체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한다.

제4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소속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 등을 위원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5·18민주유공자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요청을 받은 5·18민주유공자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를

<신 설>

지체 없이 소속 5·18민주유공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5·18민주유공자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46호서식의 복지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장이 정한다.

제41조(재심의 요구 등) ① 5·18민주유공자단체는 제40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6항 단서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제40조

<신 설>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심의·의결 사항을 재심의하여 재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5·18민주유공자 단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재심의 결과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의 요구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재심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소속 5·18민주유공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42조(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

<신 설>

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공인 회계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5·18민주유공자단체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실태조사)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 고용, 임금, 공장, 생산 설비,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 승인기준·승인조건 준수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 관련 계약의 상대방, 계약금액 등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신 설>

운영 여부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정보공개)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국가보훈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거나 그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현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5·18 민주유공자단체명, 승인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주소지, 유효기간, 그 밖의 수익사업 운영 현황

2. 법 제73조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의 의견

3.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및 정

<신 설>

지 명령 내역

③ 5·18민주유공자단체는 국가보훈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법 제7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내용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에 따른 요구가 타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제45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자료 요청은 늦어도 그 자료 제출일 3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명백히 5·18민주유공자단체의 급박한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중대한 공익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자료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 대부, 사용·수

익(이하 “우선 매각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내용과 조건에 관한 사항

2. 우선 매각 등의 경위 및 이유에 관한 사항

3. 우선 매각 등의 대상이 된 재산(이하 “해당 재산”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우선 매각 등 이후 사용용도 및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해당 재산의 등기·등록 등 공부(公簿)에 관한 사항

5. 해당 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소송관계에 관한 사항

6. 해당 재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사항

③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5·18민주유공자단체는 국가보훈처장에게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상대방, 계약금액 등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경위 및 이유에 관한

<신 설>

<신 설>

사항

3. 처분하려는 재산(이하 “처분 재산”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처분 이후 사용용도 및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처분 재산을 둘러싼 법률관계 · 소송관계에 관한 사항

5. 처분 재산의 현황 및 상태에 관한 사항

제46조(시정조치)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법 제79조제3호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47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이하 “제출요구”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정관 기타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2. 5·18민주유공자단체의 회원, 임직원 등에 대한 포상 · 징계 · 임면 등 신분상 조치 관련

사항

3.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총회, 이사회, 심의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관한 사항

4. 5·18민주유공자단체가 주관하거나 참가하는 기념식, 추념식 등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3조의 정치활동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64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7. 법 제65조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법 제69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명령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법 제72조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10. 법 제73조에 따른 회계감사 등에 관한 사항

11. 법 제7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법 제75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법 제77조에 따른 보조금의

수령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4.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18민주유공자단체에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현황,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항

15.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18민주유공자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한 물품의 현황,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항

16.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8. 5·18민주유공자단체의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한 사항

19. 5·18민주유공자단체와 관련한 법령을 시행 또는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

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5·18민주유공자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출요구를
할 경우 제출기한을 부여하되
제출요구한 때로부터 4일 이상
의 범위에서 부여해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에 따라 제출기한이 별
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

2. 명백히 5·18민주유공자단체
의 급박한 재산상 이익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그 회원·임직원 등 5·18민주
유공자단체와 관련된 자의 급박
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③ 국가보훈처장은 서면이나 전
자문서의 제출 외에도 제출요구
하는 사항의 내용 및 성질을 고
려하여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의
제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받을 수

있다.